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 보호대상 추가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99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 규정에 아동 추가	2
2.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벌칙 규정에 아동 추가	8
※ 참고자료	
1. 유사 입법례	10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지영의원 등 14인

나. 제 출 일 : 2025. 4. 14.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 규정에 아동 추가

가. 개정안 요지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 규정에 ‘아동’ 용어 추가(안 제9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u>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u>)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u>청소년</u> 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 <u>청소년유해정보</u> ”라 한다)로부터 <u>청소년</u> 을 보호하기 위하여 <u>청소년보호책임자</u> (이하 “ <u>청소년보호책임자</u>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u>청소년보호책임자</u> 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u>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u>) ① ----- ----- ----- ----- <u>아</u> <u>동 및 청소년에게</u> ----- ----- <u>아동·청소년유해정보</u> ----- <u>아동 및 청</u> <u>소년을</u> ----- <u>아동</u> <u>· 청소년보호책임자</u> ----- <u>아</u> <u>동·청소년보호책임자</u> ----- ----- ----- ----- ----- -----.

현행	개정안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는 <u>제1항 본문</u>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u>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u>청소년보호책임자</u>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u>청소년보호와</u>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u>청소년보호와</u>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④ <u>청소년보호책임자</u>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u>청소년유해정보를</u> 차단·관리하는 등 <u>청소년보호업무</u>	② ----- -----<u>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u>----- ----- ----- ----- ----- -----<u>지정된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 또는 청소년보호책임자</u>----- ----- -----. ③ <u>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u>는-----<u>아동 및 청소년보호와</u>----- ----- ----- ----- ----- -----<u>아동 및 청소년보호와</u>----- ----- -----. ④ <u>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u>는----- ----- -----<u>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u>-----<u>아동</u>

현행	개정안
를 하여야 한다.	및 <u>청소년보호업무를</u> ----- ---.
⑤ 그 밖에 <u>청소년보호책임자</u> 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u>아동·청소년보호</u> <u>책임자의</u> ----- ----- -.
제39조(과태료) ①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청소년보호책임자를</u>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 <u>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를</u> --- -----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9조의2는 인터넷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
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¹⁾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

1)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
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이 현행법의 취지상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청소년 보호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등 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19세미만의 사람으로 보면서 청소년보호책임자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6),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생략)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

「전기통신사업법」 7)8)등의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신문법」 상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정하는 것이 용어의 추가를 통한 개정보다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신문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아동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음.

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하생략)

- 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타 입법례와 비교 시, 방송법은 그 하위법령인 방송심의 규정에서 아동에 대한 별도 규정없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2조의3, 제44조의9),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 제32조의7)등에서는 개별 조항에서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인용하며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에서는 특별히 ‘아동’보호를 규정하면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신문법에 특정 용어가 부재한 것을 기계적으로 추가하기 보다는,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의 용례를 고려하여 보호 대상 청소년의 구체적 범위를 검토하고, 법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표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벌칙 규정에 아동 추가

가. 개정안 요지

-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아동’ 용어 추가(안 제3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①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1. ----- <u>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를---</u> -----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 제9조의2가 ‘아동’을 추가하는 방향이 아닌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하게 될 경우 현행규정으로도 19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할 수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방송법 (20473)	•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20678)	•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중략)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9(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중략)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중략)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기통신사업법 (20677)	•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중략)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중략)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대중문화산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악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